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검 토 보 고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4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4
2.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비교	5
3. 검토의견	10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3
III . 주요 내용별 검토	16
1. 정의	16
2. 장애인의 날	19
3. 장애인의 권리보장	20
4.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지역계획	32
5. 장애인정책위원회,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35
6. 장애영향평가	37
7.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40
8. 부칙	4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9.
- (3) 회 부 일 : 2024. 7. 10.

나. 제안이유

현재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2014년과 2022년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

를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 보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2)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적·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함(안 제3조).
- (3) 존엄권과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자립생활 권리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6조까지).
- (4)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29조).

- (5)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
- (6)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38조).
- (7) 장애아동, 장애노인, 중복장애인 및 소수유형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규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 (8) 정보공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설명 및 상담,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
- (9)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및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두고,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칙은 두지 아니함(안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Ⅱ.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 5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관련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의 개념을 확대하고, 평등권, 자기결정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개별권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 통계 구축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
- 장애영향평가 도입, 중복·소수장애인 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상담,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2.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비교

□ 제정안은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법률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과는 내용과 구성 체계상 아래와 같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의학적 판단기준 아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던 참정권, 평등권, 교육권, 정책 참여권, 정보 접근권 등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2장 장애인의 권리보장’에서 각 권리별로 정리하여 규정함.
- 제정안은 법령의 제정·개정, 예산사업 등의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확대·강화함.
-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장애노인, 중복 및 소수유형의 장애인 등에 관한 지원과 배제 금

지 조항을 명시함.

- 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설명, 상담에 응할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

< 제정안과 현행 「장애인복지법」 비교 >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3조(정의)	제3조(기본이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5조(국민의 책임)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제6조(장애인의 날)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7조(국제협력)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차별금지 등)
제2장 장애인의 권리 보장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존엄권)	제10조(국민의 책임)
제10조(평등권)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11조(자기결정권)	제10조의3(국회에 대한 보고)
제12조(참정권)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1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4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15조(직업선택권)	제14조(장애인의 날)
제16조(안전권)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건강권)	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제18조(재활을 받을 권리)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9조(자립생활 권리)	제17조(장애발생 예방)
제20조(교육권)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제21조(이동 및 접근권)	제19조(사회적응 훈련)
제22조(지식 및 정보 접근권)	제20조(교육)
제23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제21조(직업)
제24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제22조(정보에의 접근)
제25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제23조(편의시설)
제26조(사법 접근권)	제24조(안전대책 강구)
제3장 장애인정책 추진체계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7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제28조(장애인정책지역계획)	제25조의3(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29조(장애인정책위원회)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제30조(장애인정책책임관)	제27조(주택 보급)

제31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제32조(전달체계)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제33조(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제34조(실태조사)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5조(통계 및 지표의 구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제36조(장애영향평가)	제3장 복지 조치
제37조(장애인 정책연구)	제31조(실태조사)
제38조(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제32조(장애인 등록)
제4장 장애인의 권리 실현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제39조(장애아동)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40조(장애노인)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41조(장애여성)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제42조(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제43조(장애인 가족지원)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제44조(정보의 공개)	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5조(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설명)	제32조의9(자료의 요청)
제46조(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상담)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제47조(사회적 인식개선)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제48조(홍보영상)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49조(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36조 삭제
제5장 보칙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제50조(새로운 제도의 개발)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제51조(단체의 보호·육성)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제52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40조(장애인 보조건의 훈련·보급 지원 등)
제53조(권한위임)	제41조(자금 대여 등)
제54조(비밀 누설 금지)	제42조(생업 지원)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생산물 구매)
	제45조 삭제
	제45조의2 삭제
	제46조(고용 촉진)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제50조의2(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제5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50조의4(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52조(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59조의2 삭제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59조의9(금지행위)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제60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제60조의5(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 교육 등)
제61조(감독)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66조 삭제
	제67조 삭제
	제68조 삭제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
	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4조(응시자격 제한 등)
	제75조(보수교육)
	제76조(자격취소)
	제77조(자격정지)
	제78조(수수료)
	제8장 보칙
	제79조(비용 부담)
	제80조(비용 수납)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제81조(비용 보조)
	제82조(압류 금지)
	제83조(조세감면)
	제83조의2(청문)
	제84조(이의신청)
	제85조(권한위임 등)
	제85조의2(비밀 누설 등의 금지)
	제9장 벌칙
	제86조(벌칙)
	제86조의2(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88조의2(가중처벌)
	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89조(양벌규정)
	제90조(과태료)

3. 검토의견

□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이후,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그간 장애인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신체 손상에 중점을 둔 의료적 관점에 따른 장애 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부재, 수요자를 배제한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 등 변화하고 있는 장애 패러다임과 새로운 복지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¹⁾

이에 그동안 대선공약으로 새로운 장애인 관련 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채택하거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하는 대안을 마련한 바 있음.

최근에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를 통해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한 국회 논의 지원을 표명하였음.

□ 한편, 우리 국회에서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사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법률과 정책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장애인의 특정한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종견해를 제시한 바 있음.²⁾

1) 남궁은. (202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월간 한국장총, Vol.429.

2)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는 2019년 3월 제출되어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채택

□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제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새로운 기본법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복지 총괄법인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공청회 1회, 법안심사소위원회 3회를 거친 후,³⁾ 그간 발의된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 제21대 국회 관련 제출 법안 >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2707)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2843)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34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118025)	「장애인가기본법안」 (212448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316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284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341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118024)	-

주 1): 괄호안은 의안번호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검색 후, 정리

□ 제정안은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 관련 기본법 역할을 해온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동정·시혜 관점에서 권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장애 패러다임과 변화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

3)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11.24.),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2.4.26.)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3.11.21.)

으로,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 정립, 장애인의 개별적 권리 명시, 장애인정책 추진체계 개편, 장애영향평가 제도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제정안은 전반적으로 지난 제21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장애인권리보장법」 대안과 유사한 내용과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장애인의 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위원회, 장애인정책책임관 등 일부 조문 내용이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의원, 2024.6.19., 제657호)과도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 유사함.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장애영향평가,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등에 관한 예산확보, 관련 연구용역, 시범사업 실시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 등을 위해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동 법안은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등 국제적인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갖춘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인바, 그 입법취지와 법률안 세부내용에 동의함.
- 다만,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위원회, 장애인정책책임관 등이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중복되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안의 부칙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장애영향평가(안 제36조)를 포함하여 하위법령 마련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행정안전부

- 안 제6조(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4.20.)’ 및 ‘장애인 주간’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음.
- 안 제29조(장애인정책위원회) 장애인정책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

다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1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 여건,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및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 설치 여부와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 필요

다. 장애인단체 등4)

□ 안 제3조(정의) 장애인 개념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장애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

안 제11조(자기결정권) 자기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의 부모 등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필요

안 제19조(자립생활 권리) 자립생활과 주거권을 동시에 정의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주거권으로만 정의하거나 또는 주거권과 자립생활을 구분하여 정의하되, 의사표현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인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전면 수정 필요

4)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안 제38조(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지원 설치범위를 특별시·광역시
외에 도 단위까지 확대하고, 사업수행 범위 추가 필요(중증장애인생
산품 우선구매 촉진 지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조성, 정보 접근성 보장),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권리보장 관련 사업 또는 연구사업만 하도
록 하고 서비스 사업은 단체위임 또는 장애인서비스원 설립하는 것
이 타당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정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말한다.

□ 제정안에서는 장애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관련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장애’는 복잡하고 다차원적 개념으로 최근에는 개인의 손상에 기준을 두고 있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으로 보임.⁵⁾

-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란 누구나 손상과 같은 신체상 문제로만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제약에 의해서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 이는 의료적 모델에서는 장애로 보는 사람이라도 이를 보완하는 사회적 시설이 있다면, 장애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 예를 들면, ‘계단만 있는 건물’,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이 없는 컴

5) 세계보건기구. (2012). WHO 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 기획총서 I.

퓨터’, ‘자막 제공 기능이 없는 TV’ 등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이러한 환경적 불편함이 장애의 원인이라 보는 관점임.⁶⁾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문과 목적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모델에 따른 장애 개념을 반영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정안의 취지는 장애를 사회·환경적 요인과 신체·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 상호작용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여 의학적으로는 장애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이를 보완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함으로써,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의 관점 변화를 유도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결국 장애 개념 정의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대상인 장애인의 개념

6) 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또한 설정되므로, 법 집행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 대부분의 현행 법률에서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규정을 인용하여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으며,⁷⁾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임.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아: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의 날

제6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장려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간에 제1항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정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을 정하고 있음.

-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주간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⁸⁾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별법률에서 기념일을 중복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8) 「장애인복지법」 제14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권리보장

제9조(존엄권)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평등권)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동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기결정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참정권) ①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공적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치참여권이 보장되고 공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수어통역·안내보조, 선거용 보조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정당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① 장애인은 기초적인 생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업선택권)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직장 내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권) ① 장애인은 신체의 자유 및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이하 이 조에서 “학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학대 등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해 비상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접종·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예방을 위한 감

염병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할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권)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 향상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활을 받을 권리) ① 장애인은 신체·정신·사회 및 직업 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 및 재활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 고용, 교육, 체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과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자립생활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장애인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과 주택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권) ①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

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이동 및 접근권) ①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 및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기기 지원 및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안내 보조,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 인적·물적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의 연구, 개발, 확산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여성에게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식 및 정보 접근권) ①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서비스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 장애인 및 복지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 전시관, 극장, 박물관과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에 장애인의 관람·참여·향유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운동경기 지원,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및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용,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휴양시설,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등을 개선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사법 접근권)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장애인이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법적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과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 공무원을 훈련하여야 한다.

□ 제정안은 제2장에서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각각 개별 조문으로 구성하여 조 제목에 권리 명칭을 명시하고, 각 조 제1항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한 후, 이하 조항에는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책 강구·개선·요청·마련 또는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보호에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개별적·구체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권익보호와 정부의 정책집행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장애인의 개별 권리에 관한 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9조제1항(존엄권), 제10조제1항(평등권), 제12조제1항(참정권), 제15조제1항(직업선택권), 제20조제1항(교육권)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재차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격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 대한 적정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⁹⁾

- 제9조제2항(장애인의 고유성 침해 금지) 추상적인 개념인 장애인의 ‘고유성’ 침해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개념 정의 필요. 수범자의 입장이 아닌 입법·기술적 표현에 머물 가능성이 우려됨.

예컨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유성(integrity)의 의미에 대해 개인이 인격의 주체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과 상태를 변형하거나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개인 고유의 모습으로서 인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¹⁰⁾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역시 비장애인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를 요구받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제10조제3항(평등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받은 장애인의

9)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 모두가 행복할 권리: 사례로 보는 UN장애인권리협약.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차별이 국가 등이 아닌 사인 간에 발생한 경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모호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 규정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11조제3항(자기결정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개인 욕구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따라 선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불명확함.

- 제12조제5항(참정권) 장애인이 공무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후보자 등록에 대한 지원은 출마 시 지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헌법상 평등권 측면에서 비장애인 출마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어 기본권의 상충이라는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므로,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지원에 대

한 구체적 기준이 함께 규정되어야 할 것임.

- 제13조제1항·제2항(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과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제2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22조제4항(지식 및 정보접근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는 한국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으므로,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존엄권,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지식 및 정보 접근권 등의 조문은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양 법률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장과 「장애인복지법」 유사조문 비교>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제9조(존엄권) ① <u>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u>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u>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u>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u>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u>
제1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u>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의 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u>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u>
제14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① 장애인은 기초적인 생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22조(지식 및 정보 접근권) ①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u>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권리가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서비스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

제정안	「장애인복지법」
<u>전문인력 양성·파견, 장애인 및 복지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⑦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u>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4.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지역계획

제27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장애인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4. 장애인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태 및 개선과제
6. 장애인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및 운용방안
7.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구성과 역할
8. 그 밖에 장애인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장애인정책지역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정책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도 5년마다 장애인정책지역계획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연계하여 장애인정책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를 통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특성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을 위한 연도별 계획이 아닌 별도의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국가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따르는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 소관부처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장애인정책위원회,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제29조(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주요정책을 수립·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교육, 고용, 문화, 체육, 이동 및 접근성, 자립지원 등 장애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의 평가 및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역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정책의 개발·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정안은 장애인 정책의 수립·심의 및 관계 부처 의견 조정 등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와 장애인 정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제정안에서는 그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강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¹¹⁾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②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위원회 설치 필요성,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1)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장애영향평가

제36조(장애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책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대상 정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3. 대상 정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인 권리와 차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③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유무를 구분한 통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영향평가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결과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및 대상정책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

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제38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 제정안에서는 법령, 세출예산사업 등과 같은 대상 정책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영향평가는 국내·외적으로 그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은 찾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장애인들의 평등을 위하여 시행 중인 정책 및 실무 관행의 영향을 규명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의미함.¹²⁾

-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제도로는 성별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음.¹³⁾

□ 법령, 정책 등에 대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

12) 장민영. (2020). 영국의 장애영향평가 법제 현황 및 시사점. 해외법제리포트, 한국법제연구원

13) 「**성별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장애평등정책법안」(최보윤의원, 2024.6.19., 제657호)에서도 ‘장애영향평가의 실시 및 대상, 시기, 결과 반영 등’ 제정안에서 도입하고 있는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의 통합·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

- 「장애평등정책법안」은 제3장(22개 조문)에서 장애영향평가위원회, 장애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장애영향평가 교육 등 장애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제정안과 「장애평등정책법」 중 장애영향평가 관련 조문 비교).

7.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 제38조(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보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다.
- ④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원
 2.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통계 및 지표의 구축 및 관리 지원
 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영향평가 지원
 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8.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9.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원
 10.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개발 및 협력사업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보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정안은 장애인정책 수행과 권리보장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이를 지원하고, 관련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¹⁴⁾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시·광역시에 그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등의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새롭게 제정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개편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원 •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통계 및 지표의 구축 및 관리 지원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 장애영향평가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원 •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개	•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u>발 및 협력사업 지원</u>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

□ 다만, 특별시·광역시 단위에 지원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원의 역할과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 또는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개발, 통계 및 지표의 구축·관리와 각종 평가 등의 업무는 국가기관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것이어서 행정기능의 포괄적 위임 측면이 있으며, 정책개발부터 집행, 평가 업무를 하나의 민간기관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할 것임.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의를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정안의 부칙에서는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지 않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만 두고 있음.

-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은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법령이 개별적으로 정비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 제정·개정·폐지의 효력이 그 법률 또는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모든 법령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관련 법률의 외형상 변화가 없어, 부칙을 통한 다른 법률의 일괄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석상 혼란과 이해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통해 최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¹⁵⁾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부칙 시행일과 관련하여 장애영향평가(안 제36조)를 포함하여 제정안 관련 하위 법령 마련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아닌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02

15) 국회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참고자료 1: 제정안과 「장애평등정책법」 중 장애영향평가 관련 조문 비교〉

「장애인권리보장법」 중 장애영향평가 관련 조문	「장애평등정책법」 중 장애영향평가 관련 조문
제36조(장애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사업(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2.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세출예산사업 3.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기금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정책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대상 정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9조(장애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폐지를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장애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장애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보건복

의 장이 장애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3. 대상 정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장애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인 권리와 차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③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유무를 구분한 통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영향평가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장애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특정장애영향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제9조에 따른 대상정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영향평가가 실시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결과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및 대상정책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제38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정책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장애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	---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특정장애영향평가의 결과 장애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	--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장애영향평가결과와 장애인지 예산서 또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설

	치 및 기능) ①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애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장애영향평가 자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장애영향평가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장애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장애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장애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장애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